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2014. 1. 29. 제정

2014. 7. 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원인사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정년계열교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교 다른 규정과의 관계) 비정년계열교원인 강의중심교원, 연구중심교원, 외국어강의중심교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인사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비정년계열교원의 임용계약) ① 비정년계열교원을 임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임용기간: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임용하는 비정년계열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2. 급여: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비정년계열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승진임용 할 수 있다. 승진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내에 정년이 될 경우에는 정년까지 임용한다.

제4조(비정년계열교원의 자격기준) ① 비정년계열교원의 직급별 자격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연구·교육경력을 최저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교수: 박사학위 취득
 2. 부교수: 박사학위 취득 후 9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본교의 조교수 임용 후 9년
- ② 외국어강의중심교원의 경우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교원인사 규정」 제43조제1항제2호 이외의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비정년계열교원의 직급별 연차) ① 강의중심교원 및 연구중심교원의 직급별 세부 연차는 별표 1과 같다.

- ② 외국어강의중심교원의 직급별 세부 연차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비정년계열교원의 구분 변경) ① 재직 중 비정년계열교원 내에서 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교원은 재임용 심의 신청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구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강의중심교원 또는 연구중심교원에서 외국어강의중심교원으로의 변경은 신청할 수 없다.

② 비정년계열교원의 구분 변경은 소속 기관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하며,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7조(비정년계열교원의 재임용) ①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임용 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총장은 대학(원)장 등 소속기관장의 제청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 및 재임용 계약조건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원의 재임용 여부 심사는 별표 3의 서식과 별표 4의 심사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비정년계열교원의 승진임용) ① 비정년계열교원(강의중심교원, 연구중심교원에 해당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이 승진임용되기 위하여는 제4조제1항이 정하는 기간 동안 연평균 교원종합평가점수 및 연구영역에서의 연평균 실적평가점수(이하 “최저 연구실적점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1. 강의중심교원: 교원종합평가점수 150점, 최저 연구실적점수 100점

2. 연구중심교원: 교원종합평가점수 200점, 최저 연구실적점수 150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학전문대학원 임상교원이 승진임용되기 위하여는 제4조제1항이 정하는 기간 동안 연평균 교원종합평가점수가 200점 이상, 최저 연구실적점수가 10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교원이 교원종합평가점수 또는 최저 연구실적점수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제6항 및 제7항이 정하는 연구실적 의무편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비된 점수(연구실적 의무편수 포함) 외에 승진이 지연된 기간 동안 연구중심교원은 교원종합평가점수 연간 100점, 강의중심교원은 교원종합평가점수 연간 75점을 취득하여야 승진임용될 수 있다.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 ④ 부교수 직급으로 임용된 교원은 임용기간 동안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교원종합평가점수 및 최저 연구실적점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 ⑤ (삭제 2014.7.3.)
- ⑥ 연구중심교원이 승진임용되기 위하여는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상의 연구실적편수 기준(이하 “연구실적 의무편수”라 한다)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
- ⑦ 강의중심교원이 승진임용되기 위한 연구실적 의무편수는 제6항에 따라 정한 편수의 3분의 2로 산정하되,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⑧ 교원이 승진임용되기 위하여는 책임시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⑨ 대학(원)별 연구실적 기준점수는 당해 대학(원) 소속 교원의 최근 연구실적, 승진을 등을 참작하여 당해 대학(원)장의 의견을 들어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⑩ 연구실적점수는 대학(원)별 연구실적 기준점수를 100% 충족하는 경우를 150점 만점으로 하여 동일한 비율로 환산한다.

제9조(강의) ① 비정년계열교원의 강의담당시간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다.

- 1. 강의중심교원: 매학기 주당 9학점 이상 또는 12시간 이상
- 2. 연구중심교원: 매학기 주당 6학점 이상 또는 9시간 이상
- 3. 외국어강의중심교원: 매학기 주당 12시간 이상

② 외국어강의중심교원은 임용 기간 동안 연평균 교원종합평가점수 100점, 최저 연구실적점수 50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이를 미충족하는 경우 다음 재임용 기간 동안 제1항에서 정하는 강의담당시간 이외에 추가로 연간 주당 3시간 이내의 강의담당시간이 부과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최저 연구실적점수의 계산 방법은 제8조제9항 및 제10항을 따른다.
- ④ 외국어강의중심 교원은 학기 중 주당 4시간 이상의 학생 개별지도 및 상담시간을 가져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강의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초과강의료를 지급한다. 다만, 제2항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4. 1. 29. 제정)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8조의 제1항,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원 중 7월 실적평가 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외국어 교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14. 7. 3. 개정)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5년 5월 실적평가 대상 교원에 대하여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비정년계열교원인사 규정

[별표 1] 강의중심교원 및 연구중심교원의 직급별 세부 연차

직급	세부 연차
부교수	부교수5
	부교수4-2
	부교수4-1
	부교수3-2
	부교수3-1
	부교수2
	부교수1
조교수	조교수6
	조교수5-2
	조교수5-1
	조교수4-2
	조교수4-1
	조교수3
	조교수2-2
	조교수2-1
	조교수1

[별표 2] 외국어강의중심교원의 세부 연차

직급	세부 연차
조교수	조교수6-2
	조교수6-1
	조교수5-2
	조교수5-1
	조교수4-2
	조교수4-1
	조교수3-2
	조교수3-1
	조교수2-3
	조교수2-2
	조교수2-1
	조교수1-3
	조교수1-2
	조교수1-1

[별표 3]

재임용 심사 평정표(강의중심교원)

대학(원)		전공(학과)		평가위원		(인)	
직위:		성명:		평가일시		년 월 일	
	평정항목	배점					점수
		상	중상	중	중하	하	
1. 교수로서의 기본자질(20점)	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나. 인간관계(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2.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 (25점)	가. 연구능력(5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나. 연구실적(15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다. 국내·외 학술활동(5점)	(5점)	(4점)	(3점)	(2점)	(1점)	
3. 교수(강의) 능력과 실적 (40점)	가. 교수능력 및 열의(15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나. 수업이행 상태(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다. 교육효과(학생반응 등) (15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4. 교수로서의 봉사실적(15점)	가. 학생지도(5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나. 학교행사 참여 및 학교발전에의 기여(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점수 합계							점
※ 평가위원 의견(점수합계가 60점 미만인 경우 반드시 기재)							

재임용 심사 종합평정표(강의중심교원)

전공(학과) :

직위:

성명:

평가위원	평가기준 및 세부항목(기준배점)										비고	
	교수로서의 기본자질(20 점)		학문연구능력과 실적 (25 점)			교수(강의)능력과 실적 (40 점)			교수로서의 봉사실적(15 점)			점수계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10 점)	인간 관계 (10 점)	연구능력 (5 점)	연구 실적 (15 점)	국내·외 학술 활동 (5 점)	교수능력 및 열의 (15 점)	수업이행상태 (10 점)	교육효과 (학생반응 등) (15 점)	학생지도 (5 점)	학교행사 참여 및 학과발전의 기여 (10 점)		
평균 점수												
추천 여부	추천											
	미추천											
대학(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의견 :												

<작성요령>

1. 평가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평가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 및 평가 점수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균 점수 산출한 후 평균점수의 합을 점수 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추천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평균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종합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 대학(원)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재임용 심사 평정표(연구중심교원)

대학(원)		전공(학과)		평가위원		(인)	
직위:	성명:			평가일시		년 월 일	
	평정항목	배점					점수
		상	중상	중	중하	하	
1. 교수로서의 기본자질(20점)	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나. 인간관계(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2.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 (50점)	가. 연구능력(15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나. 연구실적(25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다. 국내·외 학술활동 (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3. 교수(강의) 능력과 실적 (20점)	가. 교수능력 및 열의(5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나. 수업이행 상태(5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다. 교육효과(학생반응 등) (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4. 교수로서의 봉사실적(10점)	가. 학생지도(5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나. 학교행사 참여 및 학교발전에의 기여(5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점수 합계							점
※ 평가위원 의견(점수합계가 60점 미만인 경우 반드시 기재)							

재임용 심사 종합평정표(연구중심교원)

전공(학과) :

직위:

성명:

평가위원	평가기준 및 세부항목(기준배점)										비 고	
	교수로서의 기본자질(20 점)		학문연구능력과 실적 (50 점)			교수(강의)능력과 실적 (20 점)			교수로서의 봉사실적(10 점)			점수계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10 점)	인간 관계 (10 점)	연구능 력 (15 점)	연구 실적 (25 점)	국 내 · 외 학술 활동 (10 점)	교수능 력 및 열의 (5 점)	수업이 행상태 (5 점)	교육효 과 (학생반응 등) (10 점)	학생 지도 (5 점)	학교행 사 참여 및 학업발전에 의 기여 (5 점)		
												/
평균 점수												
추 천 여 부	추천											
	미추천											
대학(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의견 :												

<작성요령>

1. 평가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평가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 및 평가 점수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균 점수 산출한 후 평균점수의 합을 점수 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추천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평균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종합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 대학(원)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재임용 심사 평정표(외국어강의중심교원)

대학(원)		전공(학과)		평가위원		(인)	
직위:		성명:		평가일시		년 월 일	
	평정항목	배점					점수
		상	중상	중	중하	하	
1. 교수로서의 기본자질(20점)	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나. 인간관계(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2.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 (15점)	가. 연구능력(5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나. 연구실적(5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다. 국내·외 학술활동(5점)	(5점)	(4점)	(3점)	(2점)	(1점)	
3. 교수(강의) 능력과 실적 (50점)	가. 교수능력 및 열의(15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나. 수업이행 상태(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다. 교육효과(학생반응 등) (25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4. 교수로서의 봉사실적(15점)	가. 학생지도(5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나. 학교행사 참여 및 학교발전에의 기여(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점수 합계							점
※ 평가위원 의견(점수합계가 60점 미만인 경우 반드시 기재)							

재임용 심사 종합평정표(외국어강의중심교원)

전공(학과) :

직위:

성명:

평가위원	평가기준 및 세부항목(기준배점)										비고	
	교수로서의 기본자질(20 점)		학문연구능력과 실적 (15 점)			교수(강의)능력과 실적 (50 점)			교수로서의 봉사실적(15 점)			점수계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10 점)	인간 관계 (10 점)	연구능력 (5 점)	연구 실적 (5 점)	국내·외 학술 활동 (5 점)	교수능력 및 열의 (15 점)	수업이행 상태 (10 점)	교육효과 (학생반응 등) (25 점)	학생지도 (5 점)	학교행사 참여 및 학과발전의 기여 (10 점)		
평균 점수												
추천 여부	추천											
	미추천											
대학(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의견 :												

<작성요령>

1. 평가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평가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 및 평가 점수를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항목별 평균 점수 산출한 후 평균점수의 합을 점수 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추천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평균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종합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 대학(원)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별표 4]

비정년계열교원의 재임용 심사 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영역	평정항목	세부기준	비고
1. 교수로서의 기본자질	가.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복무규정 준수상황, 상벌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수로서의 자질을 평정	
	나. 인간관계	동료교수, 직원, 학생 등에 대한 인간관계를 평정	
2. 학문연구 능력과 실적	가. 연구능력	임용기간 동안 연구비수혜 등 연구 업적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연구 능력을 평정	임용기간 동안 평균 연구업적점수가 기준점수*(강의중심교원은 100점, 연 구중심교원은 150점, 외국어강의중 심교원은 50점)를 초과하고 연구운 리를 준수한 경우에는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함
	나. 연구실적	임용기간 동안 발간된 연구실적물 등 연구업적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 여 연구실적을 평정	임용기간 동안 평균 연구업적점수가 기준점수*(강의중심교원은 100점, 연 구중심교원은 150점, 외국어강의중 심 교원은 50점)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 로 함
	다. 국내·외 학술활동	임용기간 동안 국내외 학술발표 등 연구업적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학술활동을 평정	임용기간 동안 평균 연구업적점수가 기준점수*(강의중심교원은 100점, 연 구중심교원은 150점, 외국어강의중 심 교원은 50점)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 로 함
3. 교수(강의) 능력과 실적	가. 교수능력 및 열의	임용기간 동안 수행한 강의교과목, 강의시수, 영어강의 등 교육업적 평 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교수능력 및 열의를 평정	임용기간 동안 평균 교육·봉사업적 점수가 기준점수(50점)를 초과하고 책임강의시수를 충족한 경우에는 최 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으로 함
	나. 수업이행 상태	임용기간 동안 수행한 강의에서 강의 기법, 강의내용 등 교육업적 평가결 과를 기초로 하여 수업이행 상태를 평정	임용기간 동안 평균 교육·봉사업적점 수가 기준점수(50점)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칙 으로 함
	다. 교육효과 (학생반응 등)	임용기간 동안 수행한 강의의 강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교육효과를 평정	강의평가결과가 소속대학(원)과 소속 학과(전공) 평균치를 모두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중(中) 이상 평정을 원 칙으로 함
4. 교수로서의 봉사실적	가. 학생지도	임용기간 동안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에 대한 지도교수로서 활동한 실적 등 학생지도실적을 평정	
	나. 학교행사 참여 및 학교발전에의 기여	임용기간 동안 보직수행, 위원회 및 봉사활동 참여 등 학교 발전에 기여 한 정도와 학교 행사에 참여한 정도 를 평정	

*의학전문대학원 임상 교원은 100점